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 안 일 | 2016. 10. 27.

제안단체 | 동물자유연대, 동물을위한행동,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요청

○ 동물자유연대,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귀 기관이 행정 예고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검토하시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 '사육시설 설치기준(제23조의7 관련)' 비고 5 수정

개정안	수정 의견
5. 사육시설 등록대상종의 용도가 T(상업/거래용), P(개인용품), B(인공증식), L(압류물/집행용)인 경우 사육시설 기준의 2분의 1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사육시설 등록대상종의 용도가 L(압류물/집행용)인 경우 사육시설 기준의 2분의 1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유

현행 '사육시설 설치기준'은 사육시설등록자가 사육동물의 내·외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동물의 요구에 맞는 사육시설을 제공¹⁾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수사항입니다. L(압류물/집행용) 용도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경우, 원활하고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과 대체로 일시적 계류에 불과한 점 등 사육시설 기준을 일시적으로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나 T(상업/거래용), P(개인용품), B(인공증식) 용도의 국제적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기준 축소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심각한 동물복지 저해

현행 사육시설 설치기준은 결코 동물의 본래 습성과 복지를 충족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며 최소기준에 불과합니다. 국내 동물수입업자와 일반 국민들 사이에 유통 중인 CITES 2급 이하의 동물 대다수가 상업/거래용 또는 인공증식이라는

1) 사육시설 설치기준(제23조의7 관련) 나. 적절한 환경제공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서 사육되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상시 생활공간을 과도하게 축소하여 동물복지에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거래되는 야생동식물의 70%가 판매점에서 대기 중 6주안에 폐사하고 있으며 50%의 개체가 동물복지 저해로 인해 스트레스 관련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²⁾ 이에 유럽연합 차원에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 개인사육 규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2년 야생동물 수출판매업체를 수의생물학적으로 조사한 결과, 80%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가 질병과 부상으로 고통 받거나 사망하였으며 6주 이내에 전체 동물의 70%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야생동물 판매 산업의 평균 사망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개인이 사육하는 파충류의 최소 75%가 1년을 못 넘기고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³⁾

○ 국제적멸종위기종 개인 사육 증가와 수입·유통·불법유입 촉진 우려

국내에서 개인이 취득할 수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은 T(상업/거래용), P(개인용품), B(인공증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육시설 기준 완화는 국제적멸종위기종 개인 사육을 증가시키고, 동물수입업자가 한 번에 더 많은 양의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전시·보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로 인해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내 수입과 유통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불법유입(밀수)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식물 거래의 25%는 불법⁴⁾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환경부도 등록된 기관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방식으로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내 불법유입을 차단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⁵⁾ 이에 환경부는 여러 가지 홍보물과 웹툰 등을 통해 국민들이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무분별하게

2) Arena P., and Steedman C., and Warwick C. (2012) Amphibian and reptile pet markets in the EU an investigation and assessment. Animal Protection Agency, Animal Public, International Animal Rescue, Eurogroup for Wildlife and Laboratory Animals, Fundacion para la Adopcion, el Apadrinamiento y la Defensa de los Anima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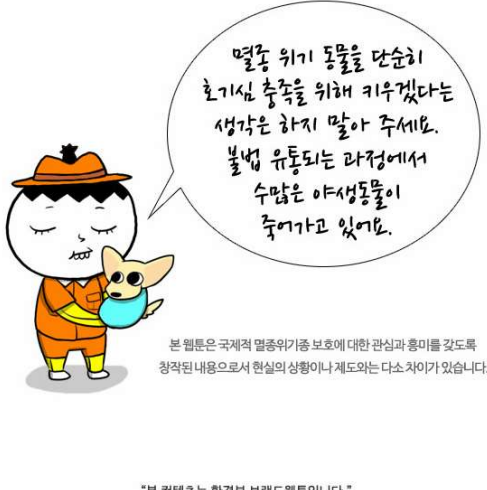
3) Toland, E., Warwick, C., Arena, P. (2012) The exotic pet trade. The Biologist, 59(3)

4) International Fund for Animal Welfare. Fight Illegal Wildlife Trade.

http://www.ifaw.org/ifaw_canada_english/join_campaigns/fight_illegal_wildlife_trade/index.php

5) 2016년 10월 19일 CITES 관리 및 동물원법 관련 간담회 자료 4p.

사육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육시설 기준 완화는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국제적멸종위기종 거래 지양을 요청하면서, 결과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수입·유통·밀수를 촉진하게 되기에 국제적멸종위기종 관리 정책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부의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 및 밀수 반대 홍보물>	<네이버 웹툰 '잡지마 위기종' 캡처>

○ 국내 사육 국제적멸종위기종 증가로 인한 생태계교란 우려

현재 국제적멸종위기종 사육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는 많은 국가에서 개인사육 외래종의 유기·유실 등에 의한 생태계 교란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국의 동물보호단체 RSPCA는 2011년 1,390마리의 유기 파충류를 구조했으며 2014년에는 1,853마리를 구조했습니다.⁶⁾ 독일은 2009년 3,700여 마리의 유기 야생동물을 구조하였으며,⁷⁾ 캐나다에서도 뱀이나 도마뱀 같은 야생동물의 유기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호기심으로 인한 동물 구입과 구매자의 싫증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⁸⁾

인터넷과 펫샵을 통해 한 해 몇 마리의 야생동물이 판매되는지 추정조차 불가능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외국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다 엄격한 야생동물판매·유통 및 사육기준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http://www.bbc.co.uk/newsround/32771337>

7) <http://www.fve.org/news/presentations/Conference%20on%20exotic%20animals/ppts/Staci%20McLennan.pdf>

8) <http://www.cbc.ca/news/canada/british-columbia/exotic-snakes-lizards-being-abandoned-in-b-c-1.2798734>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오히려 완화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개인 사육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교란 위험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몇몇 개인의 불편 민원을 고려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위의 이유를 고려하시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L(압류물/집행용) 용도를 제외한 T(상업/거래용), P(개인용품), B(인공증식) 용도의 국제적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기준 완화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